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5. 3. 21.(금)

제424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74
----------	-----

2025. 3. 2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유재목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 3월 13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재목 의원)

가. 제안이유

-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에 대한 마을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어·귀촌 유도 및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함은 물론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규정 조문의 정비 (안 제1조)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 마을공동체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4조)
- 마을공동체 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 마을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 규정 삭제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현재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청년층을 비롯한 생산가능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면서 농촌 지역은 점점 공동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약화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충북도의 경우 전체 11개 시군 중 단양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충북도는 청주 등 도시로의 사회적 유출 또한 진행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대상 인구 유입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귀농어·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의 수립·추진에 따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그간 마을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고착된 마을발전기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귀농어·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촌적응에 실패하거나, 귀농어·귀촌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귀농어·귀촌 희망자·원주민 간 갈등과 분쟁 소지인 마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어·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마을발전기금 분쟁 관련 언론 보도 >

▶ KBS (2023.02.15.), "마을발전기금이 뭐길래"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 '마을발전기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마을발전기금 납입을 두고 벌어졌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분쟁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 같은 마을 안에서 '주소 이전'만 했는데...마을발전기금을 내라?

■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도 못 받아...투명인간 취급"

권 씨는 이후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자신이 마을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마을 총회 참석은 거부됐고, 이장 선거권도 박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마을 단체 카톡방에도 참여할 수 없어 단수 일정 확인 등 마을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1조의 경우 본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위임 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이기 때문에 위임조례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서 불필요한 법령 인용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의 경우 안 제1조의 개정에 따른 인용 상위법령 삭제로 약칭된 조문이 처음 나오는 용어가 됨에 따라 약칭하지 않고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마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해 정의규정에 '마을공동체'의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 보여짐
- 안 제4조의 경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귀농어업·귀촌인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지원을 받은 마을 공동체에 대한 책무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의 경우 귀농어업·귀촌인에 대한 사업 지원 사항과 마을공동체에 마을 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보여짐

- 안 제14조는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대비하여 이를 취소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됨
- 안 제15조의 경우 시행규칙의 제정은 도지사 고유 권한으로 조례에 따라 강제할 수 없어 실익이 없는 규정임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상위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4호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지만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본 조례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마을공동체에게 마을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

며, 마을 지원금 지급의 대상·방법·범위 등 역시 적절하게 규정
한 것으로 보여짐

- 대상 :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기준으로 귀농어
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협약
한 마을
- 방법 : 마을 지원금 지원
- 범위 :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라. 종합의견

- (필요성) 귀농어·귀촌 시 마을발전기금 징수로 귀농어업·
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촌적응 실패
및 귀농어·귀촌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지원금을 지급하여 귀농어업·귀촌인
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를 유도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타당성)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였고,
마을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 역시 적
절하게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귀농어업·귀촌인과 원주민간

의 갈등 요인인 마을발전기금 문제를 해소하고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에 기여할 것이라 보여짐 또한 필요성, 타당성, 법적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다만, 마을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4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4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유재목,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에 대한 마을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어·귀촌 유도 및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규정 조문의 정비 (안 제1조)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 마을공동체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4조)
- 마을공동체 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 마을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 규정 삭제 (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3.
- 협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
- 비용추계 :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를 “충청북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3호”를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공동체”란 행정리 기준으로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협약한 마을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귀농어업·귀촌인 등의 책무) ①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귀농어업·귀촌인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정착 및 융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귀농어업·귀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지원 사업

2. 귀농어업·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귀농어업·귀촌인이”를 “귀농어업·귀촌인 및 마을공동체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귀농어업·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착자금 지원)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농어업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용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구입 자금 용자

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협약한 마을을 말한다.

제4조(귀농어업·귀촌인 등의 책무)

①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귀농어업·귀촌인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정착 및 융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귀농어업·귀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지원 사업
2. 귀농어업·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제14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받은 귀농어업·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대상으로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① -----

----- 귀농어업·

귀촌인 및 마을공동체가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관련법령 발췌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마을공동체에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및 융화촉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2. 비용 발생 요인

- 귀농귀촌지원금 관리 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지원대상으로 전입한 세대당 (가구수 비례) 지원금 지급

3. 관련조문

- 목적규정 조문의 정비 (안 제1조)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 마을공동체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4조)
- 마을공동체 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 마을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 규정 삭제 (안 제15조)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귀농귀촌 지원금 관리 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전입한 세대당 지원금 지급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3년간 총 32.4억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270,000	1,620,000	1,350,000	-	-	3,240,000
마을 지원금 지원	270,000	1,620,000	1,350,000	-	-	3,240,000
재원 조달	270,000	1,620,000	1,350,000	-	-	3,240,000
도 비	108,000	648,000	540,000	-	-	1,296,000
시군비	162,000	972,000	810,000	-	-	1,944,000